

202.43호

### 행정명령

####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7월 18일 토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나소 카운티 행정 책임자가 이자 없이 납부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부동산에 대한 학교 세금의 마지막 절반 벌금을 납부할 기한을 2020년 7월 1일 수요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이자 또는 벌금을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나소 카운티 행정부법 5-18.0(2)항.
- 행정부법 631항 세부조항 2의 재무 제한의 대상인 범죄 또는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의 재이전 비용에 모텔 혹은 호텔 등 합리적인 임시 주거 비용을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621항 세부조항 23.
- 사회복지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459-a항에 정의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가정 폭력 관련 범죄 또는 범죄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인증 주거 프로그램이 세부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법 정의 기관'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631항 부속조항 1.
- 본 행정명령 시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서비스청(Office of Victim Services)이 가정 폭력 또는 연관 범죄 피해자가 제출한 신청을 다음의 조건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627항.
  -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자는 부상에 대한 의료 기록과 그러한 부상이 범죄의 결과라는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법 459-a항의 정의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증 주거 프로그램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 신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 경찰 또는 검사와 협의 후 사회복지서비스법 459-a항의 정의를 만족하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증 주거 프로그램은 행정부법 631항

세부조항 11 또는 12에 열거된 혐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행위를 결정하고 기관에 제출된 신청서 또는 정보에 이러한 범죄를 특정합니다.

**또한**, 재난 비상사태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18일 토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방지하려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알코올 음료의 판매/제공과 관련된 사업체(레스토랑, 바, 편의점, 술을 취급하는 상점, 기타 소매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면허를 보유한 단체 등)에 대해 이러한 판매/제공이 (i) 정식 면허의 권한에 따른 구역 외 소비, (ii) 행정명령 202.3호에 따라 승인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서비스를 통한 구역 외 소비 또는 (iii) 기존 법률, 조례, 규칙 및 규정에 따른 해당 기업의 감독 의무와 더불어 행정 명령 202.38호에 따른 야외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면허 구역 100 피트 이내의 지역을 검수, 관리, 기타 감독하여 식품 또는 음료의 소비가 이러한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적용가능한 행정명령, 규정, 조례, 법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지침 및/또는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지침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오픈 컨테이너 규정, 사회적 거리두기, 페이스 커버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제공 사업체는 그러한 행정 명령, 규정, 법률, 조례, 보건부 지침 및 뉴욕주 주류관리청 지침이 완전히 준수되지 않는 한 알코올 음료의 판매/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 오직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온라인 처리만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202.8호의 지시 사항은 이에 만약 3단계 재개에 필요한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예약에 한정할 경우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차량관리부 사무소의 대면 업무를 허용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영향을 받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구 최고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로써 본인은 연장을 신청한 지불 기일이 된 다음 지방단체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21일간 연장합니다. 엘러게니 카운티 알프레드 빌리지, 워싱턴 카운티 케임브리지 빌리지, 오렌지 카운티 그린우드 레이크 빌리지, 먼로 카운티 허니아이 폴스 빌리지, 워런 카운티 레이크 조지 빌리지, 나소 카운티 매너헤이븐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뉴스퀘어 빌리지, 필드 서포크 카운티 올드 빌리지, 웨인 카운티 팔미라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피어몬트 빌리지, 렌셀러 카운티 샤그티코크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사우스 나 빌리지, 프랭클린 카운티 터퍼 레이크 빌리지.

2020년 6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